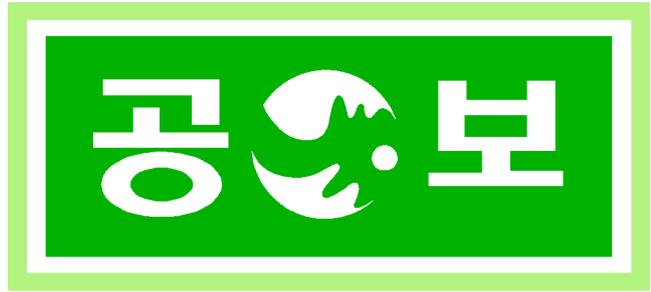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07 호 2014. 9. 22(월)

조 례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70호[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35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8호[도로명주소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3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66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회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회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
- 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
- 다.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제6조~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3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호제1항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
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4. 7. 29.자 제정 시행중인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문화진흥법」 및 상위 조례에 따라 용어 및 명칭 변경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제명, 제2조, 제1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제3조)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7조)
- 나. 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지역 제한 규정 삭제 (제4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4 - 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한라상조(주) 대표 고석봉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사업주체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동, 동화빌딩5층)
 - 나. 성 명 : 한라상조(주) 대표 고석봉
-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주 체	◦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고석봉	◦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고석봉	변경없음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5,005.0000㎡	◦ 5,005.0000㎡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 1,339.1833㎡	◦ 1,336.6833㎡	변 경
연 면 적	◦ 16,641.2539㎡	◦ 16,639.9739㎡	변 경
건 폐 율	◦ 26.76%	◦ 26.71%	변 경
용 적 륜	◦ 215.99%	◦ 215.96%	변 경
동 수(주/부)	◦ 3동 / 4동	◦ 3동 / 4동	변경없음
세 대 수	◦ 157세대	◦ 157세대	변경없음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아파트(임대)	◦ 일반민영아파트(임대)	변경없음
사 업 비	◦ 18,756,774 천원	◦ 18,756,774 천원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 2012. 12 ~ 2014. 1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 14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달신동 170	울산광역시 북구 봉곡리1길 14(달신동)	2014-09-22	달신농단지내에 위치하여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자동 638-3	울산광역시 북구 장자1길 60-8(장자동)	2014-09-22	행정구역인정자동에 위치하여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62-3, 936-18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45(호계동)	2014-09-22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부여하였다.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68 2L	울산광역시 북구 고원로 204(진장동)	2014-09-22	고원박상진의공들기리(위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1-03-22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98 5-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승2길 16(진장동)	2014-09-22	옛지명이며 현재 도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98 5L	울산광역시 북구 명승2길 16-1(진장동)	2014-09-22	옛지명이며 현재 도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51-1	울산광역시 북구 저수지길 77(송정동)	2014-09-22	송정저수지를 가는 저수지길이라 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	2004-01-05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4-1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78(구유동)	2014-09-22	법정동인 구유동에 위치해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9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208 11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3길 6(호계동)	2014-09-22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10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363-11L, 362-6, 362-7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711(영포동)	2014-09-22	영포항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부여하였다.	2001-03-2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16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증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1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9B 5L	2014-09-22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78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4-1	2014-09-22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713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363-11, 362-6, 362-7	2014-09-22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7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가.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화불편민원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제2조제5호)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나. 임무 확대(제4조제9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제공(수도꼭지, 문손잡이 교체 등)

다. 운영 방법 개정(제5조제4항)

-가사도움서비스 재료 무상제공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총무과
(전화번호 : 052-241-7232, 팩스번호 : 052-241-723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사항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 도움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자체수선 사항)제공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 1.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2.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3.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나 건의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사항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 ②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은 ----- 1. 1일 예방순찰활동 전개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4.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5. 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8.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도움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자체수선 사항)제공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 ③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의 근무형태는 -----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